

양도소득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강 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1)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방법이 있다.

① **현물출자 방법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② **양도 양수 방법 :**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 간에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2)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① **부가가치세 :**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양도소득세 :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 이월 과세 :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록세 및 취득세 :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2.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 창업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① 창업 중소기업은 ㉗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광고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며 ㉘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㉙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㉚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②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㉗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한다.

㉘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㉚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① 등록세 면제 : 창업 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② 취득세 면제 : 창업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된다.

③ 재산세 감면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

